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-130호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☎032-440-4624), 중구 도시개발과(☎032-760-7519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6. 5. 26.

인 천 광 역 시 장



1. 결정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2. 위치

-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8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
1) 중구 향동7가 28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5,420	-	15,420	100.0	
공업지역	준공업지역	15,420	감) 15,420	-	-	도로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-	증) 15,420	15,420	100.0	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유서

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 사유
	기정	변경			
중구 향동7가 28번지 일원	준공업지역	일반상업지역	15,420	420%*	기존 공업지역 내 도로로 조성되어 공업기능이 상실된 공업지역을 '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'로 대체지정(위치변경) 하고자 기본계획,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(인접 용도지역 반영)

* 인접지 「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」 용적률 반영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